

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2020년 6월 12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1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임용권자는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부서장은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해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부
입 안 자	직 위	경영기획부장
	성 명	이 현 동
	담당 성명 (전화번호)	이 태 권 (390-7615)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휴직)</p> <p>① <생략> 1. ~ 5. <생략></p> <p>② <생략> 1. ~ 2. <생략></p> <p>③ <신설></p>	<p>제40조(휴직)</p> <p>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p> <p>③ <u>임용권자는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부서장은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해야 한다.</u></p>